

□성명서□

설익은 ‘소비기한’ 강행의도,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폐기 감소를 목적으로 현재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국회)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단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낙농·유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와 낙농·유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은 동일하다.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하절기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낙농·유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해 우유변질사고 발생 시마다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유제품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고, FTA에 따른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과 낙농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기준을 현행 0~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0~5℃이하로 조정하여, 변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5~8월)에 식품의 식중독균 증식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둘째,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통점에서의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감시시스템(지자체 등) 마련, 위반 시 벌칙기준 세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유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소비자에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식약처는 법개정 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강화 및 소비자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구속력(이행 담보력)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도입 추진 시에도 당시 소비자단체에서는 식품기한을 늘리려는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써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빼앗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또한 당시에도 유통점 냉장관리 실태나 소비자 인식개선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지금, 식약처가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낙농산업의 피해를 담보로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잘못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정부가 곱씹어야 하는 이유다. 식약처가 소비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면 법개정 및 유예기간을 앞세워 설불리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대책 수립·시행 후 점검을 통해 소비기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낙농피해대책 미비로 정부가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낙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낙농가들을 더 이상 아스팔트 투쟁으로 내몰지 말기를 바란다.

2021. 4. 7(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